

23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보고

제108회기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: 위원장 김호겸
서 기 김경태

1. 조직

1) 임 원

- 위 원 장: 김호겸
- 서 기: 김경태
- 총 무: 임성원
- 부위원장: 이강선
- 회 계: 박민규

2. 회의

1) 제1차 회의

- ☞ 일 시: 2023. 11. 3.(금) 11:00
- ☞ 장 소: 총회회의실
- ☞ 결의사항

- ①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.
위원장: 김호겸 목사, 부위원장: 이강선 목사, 서기: 김경태 목사, 총무: 임성원 장로
회계: 박민규 장로
- ② 노회 지역경계 실태파악을 위해 총회본부 직원에게 총회전산에 등록된 전국교회 주소와 노회 전체의 활요와 지역 관련된 총회 결의와 총회산하 지역노회, 무지역노회 현황파악과 자료를 요청하다.
- ③ 지역노회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 확인 후 각 노회에 공문 발송하기로 하며 각 노회의 자료 요청을 11월 30일까지 하기로 하다.
- ④ 차기 회의는 11월 13일(월)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.

2) 제2차 회의

- ☞ 일 시: 2023. 11. 13.(월) 11:00
- ☞ 장 소: 총회회의실
- ☞ 결의사항

- ① 지역노회의 경계를 지역노회로부터 보고 받기로 하다.
- ② 노회의 경계 안에 타 지역노회의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경우를 노회로부터 보고 받기로 하다.
- ③ 자문위원으로 이승희 목사(증경총회장), 변충진 목사를 선정하기로 하다.



3) 제3차 회의

☞ 일 시: 2023. 12. 14.(목) 11:00

☞ 장 소: 우리들교회

☞ 결의사항

- ① 1차 접수서류를 분석하다. 16개 노회가 제출하였고, 본 노회에 소속 되어 있으면서 지역경계를 벗어난 교회는 58개교회이며 타 지역노회 교회가 본 노회 지역 경계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56개 교회로 확인되다.
- ② 추가 공문을 18일 발송하여 29일까지 접수하기로 하다.
- ③ 4차 회의는 2024년 1월 9일(화)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며, 보고 누락된 노회에 대해 제재안을 4차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다.

4) 제4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1. 9.(화) 11:00

☞ 장 소: 총회회의실

☞ 결의사항

- ① 미제출노회에 대해서 제재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노회와 접촉 후 논의하기로 하다.
- ② 중간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총회 서기와 총무를 다음 회의 때 모시고 설명하기로 하며, 자문위원 이승희 목사, 변충진 목사를 모시고 자문을 받기로 하다.
- ③ 연구내용과 범위가 방대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실사에 따른 연구비를 500만원을 추경하기로 하다.
- ④ 5차 회의는 2월 1일(목)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.

5) 제5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2. 5.(월) 11:00

☞ 장 소: 총회회의실

☞ 결의사항

- ① 지역노회 전수조사 결과
가. 지역 내 타 노회 소속의 교회 수: 193교회 / 약 21노회
나. 지역을 벗어난 본 노회의 교회 수: 159교회 / 약 20노회
- ② 지역경계가 총회 안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기에 지역경계를 지키기 어려우며 혼잡한 지역 경계를 1년 안에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. 따라서 노회로 하여금 지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회 지역 경계 위원회 상설화를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.

6) 제6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5. 7.(화) 10:00

☞ 장 소: 비대면회의

☞ 결의사항

- ① 본 위원회가 총회 총대를 대상으로 노회 간 지역경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다.
가. 일시: 6월 11일(화) 오전 11시
나. 장소: 총회회관 5층 예배실

다. 대상: 총회총대

라. 방법: 발제 후 질의응답(예배 15분, 발제 3인 각20분, 질의응답 15분)

마. 주제 및 강사:

a. 노회 간 지역경계 설문 결과 소개(서기 김경태 목사)

b. 개선방향(자문위원 변충진 목사, 임용택 목사)

② 강사연락은 서기 김경태 목사에게 맡기어 조정하기로 하다.

③ 공청회 진행을 위하여 300만원 추경을 청원하기로 하다.

7) 제7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6. 14.(금) 10:30

☞ 장 소: 비대면회의

☞ 결의사항

① 위원들이 제출한 대안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토대로 109회 노회 간 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다.

② 상설위원회 전환 시 위원회 규칙에 관한 부분은 서기 김경태 목사가 초안을 잡아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하다.

③ 다음 제8차 회의는 7월 11일(목) 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가지기로 하다.

8) 제8차 회의

☞ 일 시: 2024. 7. 11.(목) 11:00

☞ 장 소: 총회회의실

☞ 결의사항

① 최종보고서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.



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최종 보고

1. 제108회 총회 수임사항

지역노회의 경계를 제79회 총회 결의사항대로 시행

2. 처리 내용

현 총회 내의 노회현황(제108회 총회 기준)은 지역노회 120개, 무지역노회 41개, 해외노회 3개를 합하여 함께 총 164개 노회입니다. 지역노회의 상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노회 내 타 노회는 총 21개 노회 193개 교회이며, 지역을 벗어난 지역노회는 총 20개 노회 159개 교회로 파악되었습니다.

3. 최종결론

- 1)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청원
제79회 총회 결의사항을 천서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적용하여 더 이상의 지역 이탈을 방지 하며, 제109회 총회 이후부터 지역경계를 이탈한 노회에서는 총회 총대권 전원 중지 및 총회와 노회의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을 일체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노회 규칙에 노회 지역 삽입 청원
제98회 총회 보고서를 참고하여 분립 시 지역경계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노회들은 해 노회의 지역경계를 노회 규칙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) 무지역노회의 분립 제한 청원
무지역노회의 분립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야 하며, 제88회 총회결의(지역노회에서 무 지역으로 갈 수 없다.)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- 4)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상설 청원
노회가 분립/합병 시 본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회 경계를 명확히 기명하도록 하여 분쟁 소지를 없애고 위반 시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경계 질서를 선 도하도록 해야 합니다. 이에 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.(별첨: 규정안)
- 5) 노회 간 지역경계 설정 및 노회의 지역경계 지도와 회의비: 2,000만 원

2024년 9월

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

위원장 김 호 겸

서 기 김 경 태

청 원 서

수신: 총회장

참조: 서기 및 재정부장

제목: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청원의 건

아래와 같이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1)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청원
제79회 총회 결의사항을 천서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적용하여 더 이상의 지역 이탈을 방지 하며, 제109회 총회 이후부터 지역경계를 이탈한 노회에서는 총회 총대권 전원 증지 및 총회와 노회의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을 일체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노회 규칙에 노회 지역 삽입 청원
제98회 총회 보고서를 참고하여 분립 시 지역경계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노회들은 해 노회의 지역경계를 노회 규칙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) 무지역노회의 분립 제한 청원
무지역노회의 분립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야 하며, 제88회 총회결의(지역노회에서 무 지역으로 갈 수 없다.)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- 4)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상설 청원 및 재정청원
노회가 분립/합병 시 본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회 경계를 명확히 기명하도록 하여 분쟁 소지를 없애고 위반 시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경계 질서를 선 도하도록 해야 합니다. 이에 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.(별첨: 규정안)
- 5) 노회 간 지역경계 설정 및 노회의 지역경계 지도와 회의비: 2,000만 원

2024년 9월

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

위원장 김 호 겸

서 기 김 경 태



〈별 첨〉

총회 노회 간 지역경계위원회 규정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노회 간 지역경계위원회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위원회는 지역 노회 간에 분립과 합병 할 때 지역 경계의 확실한 기준을 확립하여 노회 간의 화합과 노회 안의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임무)

본 위원회는 노회 지역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노회 지역 경계를 설정해 준다.

제4조(설치)

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.

제5조(사무소)

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에 둔다.

제2장 조 직

제6조(위원)

1. 본 위원회는 12인의 총대로 구성하고,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2. 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7조(임원)

1. 조직
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서기 1인, 회계 1인, 총무 1인으로 하고,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2. 임무
 - 1) 위원장: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 - 2) 부위원장: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.
 - 3) 서기: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록을 작성하고, 제반 서류를 비치, 보관하며, 제반 문건을 발송, 접수하고 분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.
 - 4) 회계: 본 위원회의 재정 업무를 사항을 관장한다.
 - 5) 총무: 본 위원회의 연구실행 업무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 관장한다.

제8조(분과)

본 위원회 산하에 연구분과와 조사분과를 두며, 그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조직
 - 1) 각 분과 본회 임원회가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2) 분과의 임원은 분과장 1인, 서기 1인으로 하고, 각 분과에서 선임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2. 임무

- 1) 연구분과: 총회로부터 수입 받거나 총회 결의사항 그리고 노회로부터 질의 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는 부분을 연구 시행토록 한다.
- 2) 조사분과: 총회로부터 수입 받거나 총회 결의사항 그리고 노회로부터 질의 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는 노회 간의 경계를 직접 실사, 점검, 조사 한다.

제9조(전문위원)

본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)

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각 분과는 분과장이 소집한다.

제11조(전산화)

본 위원회는 노회 규칙에 경계를 명시하도록 지도와, 노회 경계를 총회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여 활성화한다.

제3장 재 정

제12조(재정)

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3조(감사)

회계는 총회가 정한 제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

본 규정은 교단 총회 결의와 동시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조(규정개정)

본 위원회의 규정 변경은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3조(세칙) 본 위원회의 각 세칙은 임원회 결의로 정한다.

제4조(통상관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규칙을 우선으로 따르되 기타 부분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2024. 9. 23